

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·확인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
자본재등 도입자	상호 또는 명칭(영문)	사업자등록번호(전화번호)		
	신고된 사업명			
	외국인투자 신고일	년	월	일
	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	원(USD		

자본재 등을 공급하려는 자	상호 또는 명칭(영문)			
	국적			

자본재 등 도 입 물 품 명 세	HSK 분류번호	품명	수량	규격	제작자	금액 (기준통화·도입통화)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 :)

수탁기관장 귀하

신청인 귀하

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장 직인

첨부서류	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⑬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.

- 출자받은 자금으로 자본재 도입 시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5제4항에 따라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(기준통화)로 표기합니다. 다만, 실제 도입통화가 기준통화와 다른 경우 도입통화도 표기하며, 환율은 검토확인신청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.
- 출자목적물로서의 자본재 도입 시: 자본재 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표기합니다.

처리절차

